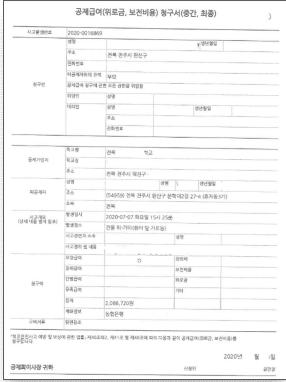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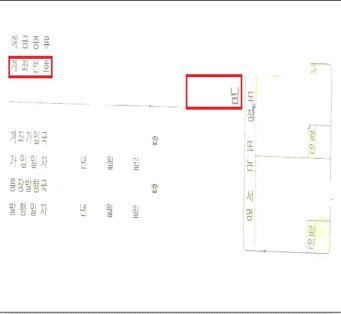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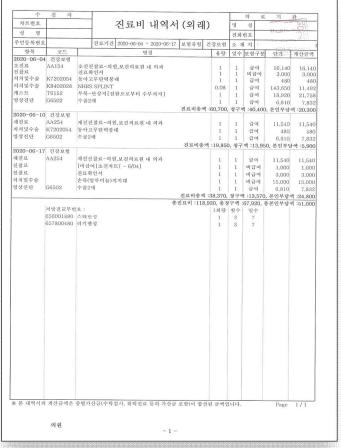


#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

## 필수 제출서류

서 류 명	기 타 사 항	서 류 예 시
<p>• 공제급여 청구서</p> <p>발급처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</p>	<p>① ‘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’ 접속 (<a href="http://www.schoolsafe.or.kr">www.schoolsafe.or.kr</a>)</p> <p>② ‘청구서 작성’ 후 출력</p> <p>③ 청구인 서명/인</p> <p>(청구서 하단 신청인 이름 옆)</p>	
<p>• 청구인 통장사본</p> <p>발급처: 은행</p>	<p>[방법1]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</p> <p>[방법2] 통장이 없다면, 은행에서 ‘계좌개설 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제출</p> <p>(은행 홈페이지 출력 가능)</p>	
<p>•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 (=진료비 납입확인서)</p> <p>발급처: 병·의원</p> <p>• 약제비 계산서 · 영수증</p> <p>발급처: 약국</p>	<p>카드매출전표(카드 영수증)나 현금영수증만 제출시 인정 불가</p> <p>(반드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)</p>	
<p>• 진료비 세부내역서</p> <p>발급처: 병·의원</p>	<p>위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과 다른 별도의 서류임</p> <p>(‘학교안전법 시행규칙’ 개정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함)</p>	

## □ 상황별 제출서류

(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, 위 필수서류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)

구분	상 황	서 류 명	발 급처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구액(치료비)이 50만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· 치료부위가 ‘치아’인 경우</li> </ul>	진 단 서	병 원
2	· 청구액(치료비)이 50만원 이상인 경우	주민등록등본	주민센터(동사무소), 민원24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">www.minwon.go.kr</a> )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(=보상금 수령인=통장 예금주)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</li> <li>·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가 아닌 친척(할머니, 고모 등)일 경우</li> </ul>	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(동사무소), 민원24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">www.minwon.go.kr</a> )
4	·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	MRI판독지	병 원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, 사고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</li> <li>예) 사고당일은 보건실에서 처치하고,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간 경우</li> </ul>	보건기록지 (=보건일지)	학교 보건실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 5번 보건기록지(=보건일지)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예) 사고당일에 보건실, 병원 둘 다 가지 않아 사고일 증빙이 어려운 경우</li> </ul>	초진기록지	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병원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교회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</li> <li>· 선생님 사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</li> </ul>	대납확인서 (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 →행정정보→학교안전 공제회→제목 : 대납확인서 서식)	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제회에 서식 요청 (☎063-272-0807)

\* 위 서류 이외에도 요양급여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